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17
----------	-----

2021. 7. 1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7. 1. 김형대 의원 등 5명

나. 상정의결

-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7. 13.)
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김형대 의원)

-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의 명칭·위치 등을 기재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의 명칭·위치 등을 기재하여 별표 1 신설(안 제3조)
- 나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제4호, 제6조제3항, 제7조제1항~제2항, 제8조제1호~제2호·제5호 제11조제1항, 제13조제3항, 별표 3)
- 다.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간이용권 항목을 삭제(안 별표 2)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,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(아동복지 시설의 설치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신·구별표대비표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상원)

- 본 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(의안의 발의)에 따라 김형대 의원 등 5명 으로부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시설의 명칭·위치 등을 기재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문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
- 안 제3조(설치 등)는 놀이터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별 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치·운영 현황(※ 집행부 자료 재구성)은 별첨과 같은 바 내용 설명이 요구됨
- 안 제7조(이용료 등)관련, [별표 2]는 현행 [별표 1]에서 규정한 연간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바, 삭제 사유의 설명과 함께 그간의 연간 이용권 이용현황 설명(부칙 제2조와의 연계 설명)이 요구됨

또한, [별표 3]은 현행 [별표 2]에서 규정한 전액감면 대상자에 「서울 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1)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는 사항이며,

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”에 따른 사항임

1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병역명문가”란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2. “예우대상자”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 의 : 본 조례안의 이용료 징수 기준에 따르면 20명 이상 단체일 경우 이용료의 50%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인원안에 전액감면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비용을 감면해주는지
- 답 변 : 단체 인원의 총액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당으로 비용 감면을 해주는 것이므로 전액감면대상자는 전액 감면을 받고 나머지 인원은 이용료의 50%를 감면 받을 수 있음
- 질 의 : 세곡동에 위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인접한 타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경우 강남구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보이므로 강남구민에게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
- 답 변 : 현재 도곡동에 위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서울시비 7억 원을 지원받아서 설치한 시설로 강남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현재 도곡동에 위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이용자의 70%가 도곡동 거주 아동들로 지역적으로 가까운 아동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.
세곡동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대왕초등학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가까운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7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